

아빠~ 함께해요!

# 아빠육아휴직으로 아이의 미래가 달라져요!!

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2년입니다. **엄마 1년, 아빠 1년**



## 아빠육아휴직 제도

- 휴직대상 :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근로자
- 휴직기간 : 최대 1년(1개월 단위로 나누어 사용가능)  
※아빠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편견은 NO! 1개월부터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요.
- 휴직급여 : 통상임금의 40%(상한액 100만원, 하한액 50만원)

## 아빠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'아빠의 달'(인센티브) 지원

-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**아빠의 처음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(최대 150만원)**을 지원 (엄마·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음)

## 아빠육아휴직 활용사례

### <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유○○씨, 35세>

"남자로서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회사와 직장상사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여러 학원을 다니며 집에 혼자 있는 1학년 아이를 보고 **아빠로서의 도리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.**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직장가 가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꼈고 복직 후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"

### <보령시에 거주하는 김○○씨, 38세>

월 200만원인 근로자 김 씨는 아내가 첫째 아이로 1년 육아휴직하여 1,200만원을 받았고, 1년 후에 같은 자녀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450만원(1개월 150만원)을 지원받음



## 아빠육아휴직 기업 지원

- 육아휴직 사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과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.